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307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1. 20.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가소1933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6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경 화성시 D 일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일반에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토지를 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피고가 2015. 6.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분양하는 토지를 매수할 사람으로 E를 소개하여, E은 2015. 7.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화성시 F 토지 중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56,3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을, 2015. 7. 22. 잔금 51,35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E이 원고의 영업으로 모집된 매수인인 것으로 인정받았다.

다.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자 소외 회사는 2015. 7. 22. 원고에게 영업수당으로 7,228,000원(이하 ‘이 사건 영업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그중 5,561,25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5. 10. 21. E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공유물분할 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33339)의 판결 확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자,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6,350,000원 전액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영업수당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인데,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도에 해제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영업수당을 반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위 영업수당의 일부로 지급받은 5,561,25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E를 소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소개의 대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수당 중 5,561,250원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고, 이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영업수당을 반환하지도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5,561,2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영업수당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56,350,000원인데 이 사건 영업수당은 위 매매대금의 12%를 넘는 7,228,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수당은 단순히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한 대가로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매매계약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이행이 완결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중도 해제되어 위 해제조건이 성취된 이상 설령 그 해제의 귀책사유가 일부 소외 회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위 해제조건을 고의로 성취시켰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영업수당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역시 소외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영업수당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같은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위 영업수당 중 5,561,25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중도에 해제되어 위 해제조건이 성취된 이상 피고로서도 위 5,561,250원을 더 이상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영업수당을 소외 회사에게 직접 현실적으로 반환하지는 않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소외 G을 매수인으로 모집하여 소외 회사와 위 G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 3. 17.자 매매계약이 새로 체결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영업수당을 이 사건 영업수당의 반환에 갈음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여전히 위 영업수당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56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김영환, 판사 조진용